

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6. 6. 23.>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

국가공무원 정원표(제3조 관련)

직급 등 기관	합 계	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	경기도	강원 특별 자치도	충청 북도	충청 남도	전북 특별 자치도	경상 북도	경상 남도
총 계	24	3	3	3	3	3	3	3	3
일반직 계	24	3	3	3	3	3	3	3	3
고위공무원단	8	1	1	1	1	1	1	1	1
농업연구관	8	1	1	1	1	1	1	1	1
농촌지도관	8	1	1	1	1	1	1	1	1